

임금채권보장기금

자산운용지침 (IPS)

2011. 6.

고 용 노 동 부

목 차

1. 개 요	1
2. 자산운용관련 법령	3
3. 자산운용의 목적·원칙	4
4. 자산운용체계	5
5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	7
6. 자금수지계획	9
7. 자산배분 정책	11
8. 위험관리 정책	15
9. 자산운용방식 및 금융기관 선정	18
10. 성과평가	21
11.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	23
12. 감사 및 공시	25
13.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	26

개 요

1.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

- 본 자산운용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함)은 국가재정법 제63조(기금 자산운용의 원칙)와 79조(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)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함을 목표로 한다.
- 본 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이 작성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.
-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관련 각종 지침, 원칙 및 기준 등을 보완한다
- 본 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

1.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

- 본 지침은 자산운용의 투자정책, 투자목표, 투자지침 및 성과평가 원칙을 제시한다.

-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금자산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3 기금의 개요

- 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1998.7.1 최초로 설치하였다.
- 기금의 주된 재원은 법정부담금, 변제금, 자산운용수입 등이며, 이를 체당금 및 반환금 지급, 무료법률구조 부문에 운용하고 있다

자산운용관련 법령

2.1 자산운용관련 법령

- 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, 임금채권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적용을 받고 있다.

자산운용의 목적·원칙

3.1 자산운용 목적
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며, 노동 정책, 금융정책을 비롯한 기타 정부정책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운영한다
-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에 대한 보장제도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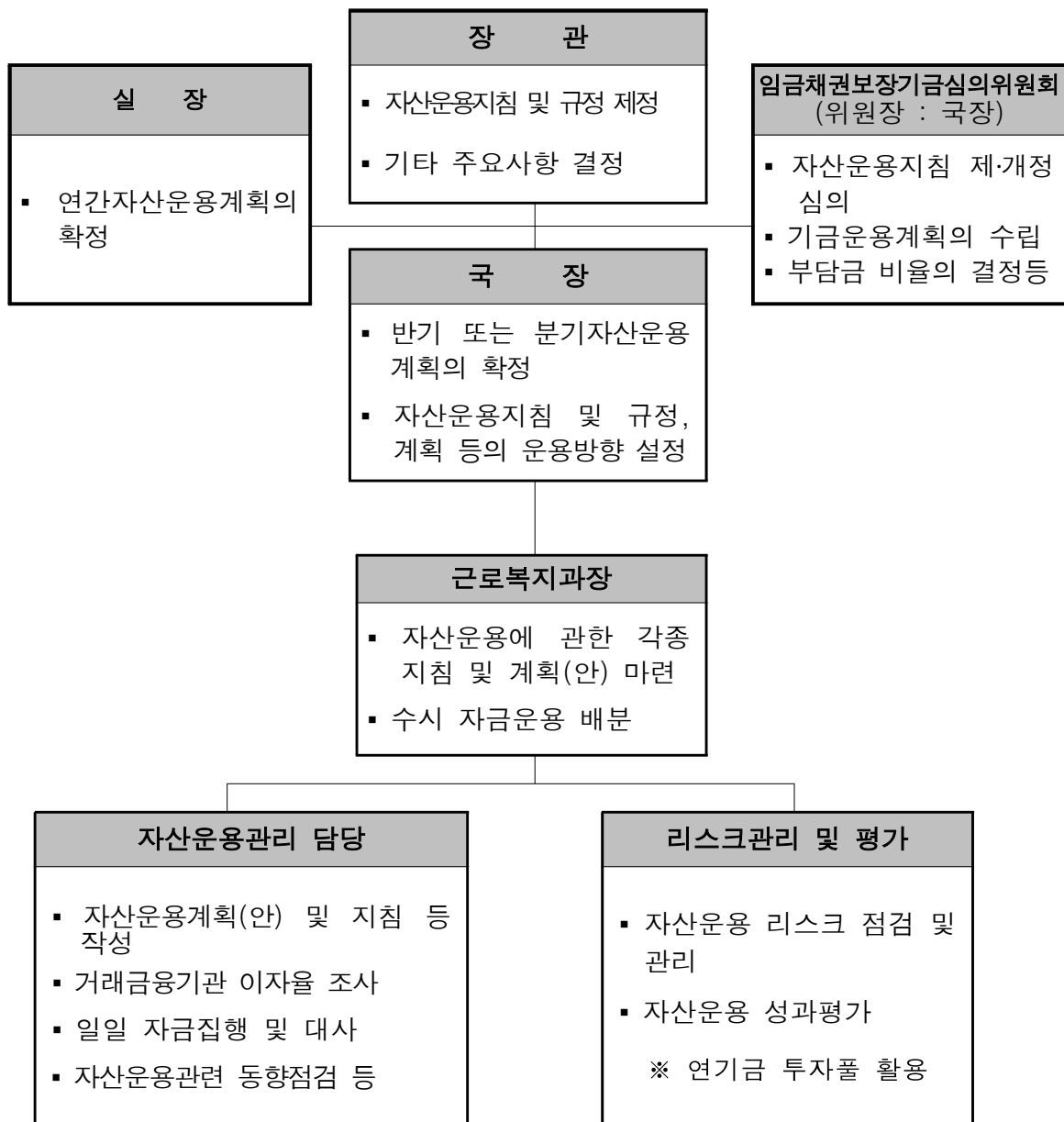
3.2 자산운용 원칙

- 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에 의거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.
- 1) 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(안정성의 원칙)
 - 2)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산 운용계획에 반영한다(유동성의 원칙)
 - 3) 경제여건과 주어진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용한다(수익성의 원칙)
 - 4) 기금의 설치목적 및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(공공성의 원칙)

4

자산운용 체계

4.1 자산운용 조직체계 및 관장사항



4.2 자산 운용조직과 역할

□ 기금의 관리,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『임금채권 보장기금심의위원회』를 구성하고, 자산운용 관련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한 「여유자금 자산운용 자문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

○ 기금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근로기준정책 심의관으로 한다.(상세구성은 별지와 같다)

○ 심의사항

- 자산운용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사업주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
□ 자산운용 자문위원회

○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임금복지과장으로 한다.(상세구성은 별지와 같다)

○ 자문사항

- 여유자금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기타 여유자금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

5.1 목표수익률

-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기금의 사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을 말한다
-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목표수익률을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
 - 1)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금의 평균 투자기간을 대표하는 “CD91 일물 유통수익률”로 설정한다
 - ※ CD91일 물 유통수익률(91일 만기 CD(양도성 예금증서)의 수익률)
 - 2) 중장기 자금의 목표수익률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“예상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예상수익률 중 높은 것”으로 설정한다.
 - ※ $\text{Max}\{1\text{년만기 정기예금 예상수익율, 예상물가 상승률}\}$

5.2 허용위험한도

- 허용위험한도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 (수익률 감소)에 대한 수용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.
- 기금은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위험 및 시장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위험 종류별로 적정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허용위험한도를 산출하여 관리한다.

5.2.1 유동성위험의 허용위험 한도

- 유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으로 운용할 적정 유동성 규모 및 중장기 자금의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. 적정유동성 규모의 경우 99% 신뢰수준하에서 12개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.

5.2.2 시장위험의 허용위험한도

- 기금 운용에 있어 단기자금은 “1년간의 Shortfall Risk \leq 1%”를 중장기자금은 “1년간의 Shortfall Risk \leq 5%”를 만족하는 운용상품을 선택한다.

※ Shortfall Risk : 특정한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, 기금은 자금운용으로 인해 원금을 미달할 가능성으로 정의한다.

자금수지계획

6.1 자금수지분석 및 계획 수립

- 기금의 자금수지계획을 연단위로 수립하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·분석하여야 한다
-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은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선정, 금융기관별 자산배분 기준, 운용기간과 운용상품의 종류 및 투자제한사항 등 자산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적정 단기자금 규모 및 중장기 자금 규모를 추정토록 수립하여야 한다.

6.2 적정 단기자금 규모 산정

- 여유자금 관련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항목의 규모, 속성, 시기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하여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정한다.
- 적정 유동성 범위 산출은 자금수지계획 수립시 부족분(순지출)을 커버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확률분을 더해 산출한다.

6.3 여유자금의 분류

- 여유자금은 다음과 같이 자금성격에 따라 단기자금과 중장기 자금으로 분류된다

- 단기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만기 1년 미만 자금을 말한다.
 - 1) 현금성자금 : 만기 1개월 미만의 자금으로서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현금 및 그와 대등한 금융자산을 말한다.

 - 2) 유동성자금 : 만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으로서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을 말한다.

- 중장기자금이라 함은 만기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단기 자금과 공자기금 위탁금을 제외한 여타 자금으로서 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비교적 중·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.

자산배분 정책

7.1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

-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투자 가능한 자산군 및 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의 예탁, 재정자금에의 예탁, 국가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(국채, 지방채, 회사채, 수익증권, 출자증권, 주식)의 매입으로 한다.
-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운동하며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.
 - 1) 제1금융권(시중은행)에의 정기예금, RP, MMDA 등
 - 2) 제2금융권(증권회사 등)에의 수익증권(채권형, 채권혼합형 등), ELS 등
 - 3)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
 - 4)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통합펀드(연기금투자폴)
 - 5) 실물펀드(부동산펀드, 선박펀드 등을 포함한다) 등 대체투자 및 해외펀드(단, 자산군 및 투자지역, 통화 등을 달리하는 fund of funds 형태의 재간접투자에 한한다)

7.2 자산배분의 원칙

- 기금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, 허용위험한도 및 당해연도의 자금수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을 실행한다.
- 동일한 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인 경우 수익성을 우선하고, 수익성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되, 금융기관 평가 순위, 예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산예치한다.
- 각 자산군별로 목표투자비중을 정하고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대처 등을 위해 그 기준하에 허용범위를 설정한다.

7.3 자산운용방향

- 적절한 유동성 확보
 -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단기자금(유동성자금)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균형있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
 -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여 확정금리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한다.
- 체계적인 위험관리
 - 자산종류별로 투자한도, 손실, 위험한도, 중도해지기준, 투자제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한다.

- 연기금 투자폴 활용으로 전문성 부족 보완
- 기금운용 전문인력,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해서는 연기금 투자폴을 활용한다.

7.4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

- 제1단계 : 적정 단기자금 규모 도출
 - 최근 3~4년간의 자금수지 분석을 통하여 99% 신뢰수준하의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도출한다.
 - 제2단계 : 경제상황분석
 - 과거의 자산군(물가상승율, 확정금리형 상품, 국내채권, 국내주식)별 시계열 데이터 및 벤치마크(BM)수익률을 분석하여 현재의 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합리적 가정하에 자산권별 기대수익율 및 변동성을 예측한다.
 - 제3단계: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한도 설정
 - 목표수익율: 3.9%
 - 단기자금: CD91 일물 예상수익율 → 2.73%
 - 중장기자금: Max{1년만기 정기예금 예상수익율, 예상물가 상승률} → 4.3%
 - 허용위험한도
 - 단기자금: shortfall Risk ≤ 1%
 - 중장기자금: shortfall Risk ≤ 5%
- ※ 각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율이 '0%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단기자금 1%, 중장기자금 5% 이하'로 통제

- 제4단계 : 자산배분(안) 검토 및 설정
 - 선택가능한 자산배분(안)을 도출하여 검토한다.
 - 경제여건,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자산배분(안)을 설정한다.
- 제5단계 : 자산군별 허용범위 설정
 -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군별 허용범위를 설정한다.

7.5 자산배분 및 허용범위

구 분	허용범위 (Range)	2011년도 자산배분안			2010년 자산배분	
		최소	목표비중(%)	최대	계획(%)	실적(%)
단기자금	정책적	정책적	25	정책적	20	25.9
확정금리	±10	14	24	34	26	17.3
채 권	±10	35	45	55	51	51.8
주 식	±5	1	6	11	3	5.0
대안투자	-	-	-	-	-	-
총 계			100		100	100

*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통계적 추정치인 점과 예상하지 못한 시장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산군별 허용범위 설정

* 중장기자금규모: 2011년 여유자금 1,896억원(예상)의 75%수준(1,429억원)

7.6 자산배분안 재조정

-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·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경우,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재조정한다.

위험관리 정책

8.1 위험관리 원칙

- 자산운용 수익은 위험에 대한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자산운용이 각종 관련법령 및 지침과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등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실시한다.

※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: 펀드메니저들이 투자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투자하였는지,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감시·감독하는 업무활동

- 기금자산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,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.

8.2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

- 위험의 종류 및 절차

- 자산의 관리·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, 신용위험, 유동성위험으로 나누어 측정 및 점검한다.

- 시장위험은 금리, 주가,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.

- 관리방법 : shortfall Risk≤5%로 통제하고, 시장위험(Var)을 일별/월별로 측정하여 관리한다.

-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채권 발행사의 부도나 워크아웃 등의 위험이다

- 관리방법

- 채권 : A⁻이상, CP : A⁻이상 등

- 주식 : 발행주식수의 5/100이내, 보유주식 총액의 10/100이내 등

- ※ 구체적인 기준은 연간 자산운용 계획에 따른다.

- 유동성위험은 예측치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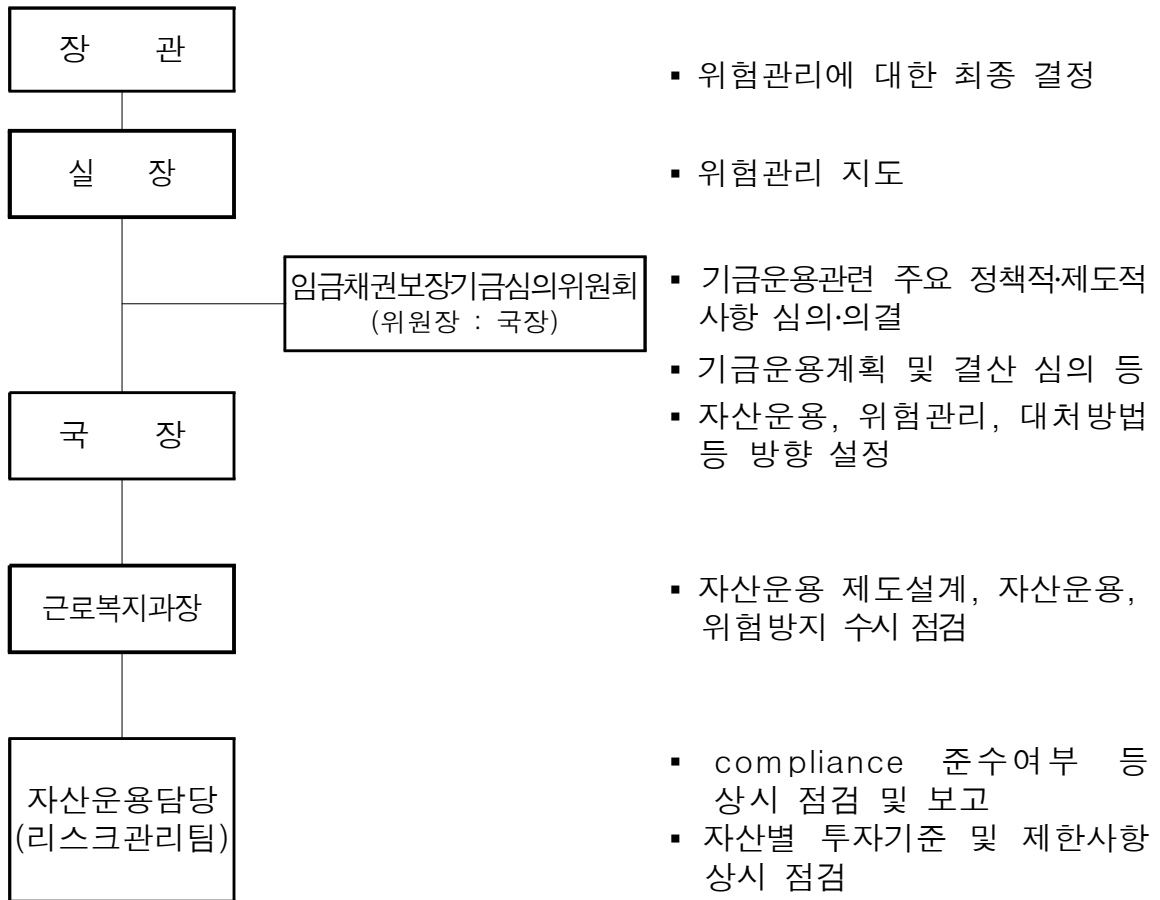
- 관리방법 :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99% 신뢰수준하에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정한다.

- 위험측정 기준 및 활용

- 자산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의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실시한다.

-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, 시장위험,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(펀드평가사, 사무수탁사)을 통하여 측정 및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연기금 투자쪽에 위탁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8.3 위험관리 체계도



자산운용방식 및 금융기관 선정

9.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

- 기금의 자산운용은 전담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자금의 일부를 외부 집합투자 전문기관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폴 등에 위탁 운용할 수 있다.
- 집합투자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9.2 외부위탁대상 기관

- 외부위탁운용·기관은 연기금투자폴, 은행권 금융기관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, 집합투자업자, 투자자문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1) 은행권 금융기관

- 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
-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
- ③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2) 집합투자기관

- ① 주식, 채권, 수익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금융 투자회사
-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업자
-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투자 자문업자

9.3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

- 구체적인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.
- 위탁기관은 제1단계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수익률, 고용보험 기금 등 고용노동부 각 기금운용수익률 또는 운용사실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, 제2단계로 제1단계에서 선정된 위탁기관들로부터 자산운용상품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익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.
- 위탁대상 시중은행은 예탁일 기준 동일 예탁기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제시수익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.
- 판매사(증권사)는 영업용순자본비율, 수익증권 판매량, 자산부채비율, 총자산이익률, 운용성과(수익률) 등의 지표로,
- 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, 수익증권 판매량, 운용성과(수익률) 등의 지표로 한다.

-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,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- 위탁운용사의 계약 위반 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.

10

성과평가

10.1 성과평가의 목적

- 성과평가는 일련의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진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

10.2 성과평가의 원칙

-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하되, 외부 전문기관(펀드평가사 등)에서 수행한다.
-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자산운용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.
-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, 보조적으로 평잔수익률을 사용한다.
- 평가 결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(근로기준정책관)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에 반영한다.

10.3 성과평가 기준

- 운용성과의 평가지표가 되는 기준수익률은 운용기간별 · 운용상품별 대표상품을 사전적으로 설정한다.

《기준 수익률 설정》

구분		기준수익률	운용기간	비 고
단기 자금	현금성자금	MMF수익률	1개월 미만	한국은행
	유동성자금	CD91일물	1개월 이상~ 6개월 미만	한국은행
		정기예금 6개월~1년 수익률	6개월 이상~ 1년 미만	한국은행
중장기 자금	확정금리	정기예금 1년~2년 수익률	1년 이상	한국은행
	채권	잔존만기별 채권지수 수익률		채권평가사
	주식	KOSPI 지수(90%)+ KIS콜금리지수(10%)		한국거래소
	대체투자	상품별 대표지수		지수발표기관
집합상품투자		상품별 기준수익률		운용기관
전체 포트폴리오		$\Sigma(\text{자금별 투자비중} \times \text{자금별 기준수익률})$		

11

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

11.1 기본원칙

- 의결권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한다.

11.2 행사기준

-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되, 독립적 투표(Shadow voting)를 원칙으로 한다.
- 다만,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1.3 행사방법

-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
- 다만,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행한다.

11.4 공시 등

-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7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한다.
 - 1)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 : 구체적인 행사내용
 - 2)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사항 :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등

- 간접투자자인 기금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이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한 때에는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.

12

감사 및 공시

12.1 감사 및 공시 정책

□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감사

- 감사관실은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와 부정행위 여부,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.

□ 운용에 관한 공시

-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.

- 1) 공시내용 :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,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,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, 기금 운용수익률, 자산운용지침(IPS) 등

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

13.1 행위준칙

- 자산운용담당자(이하 “담당자”)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- 1) 담당자는 관계법령,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담당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)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3)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,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- 4) 담당자는 기금이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임을 인식하고,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.
- 5) 담당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, 수익성, 공공성이 최대화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< 별지 1 >

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

(2010.9.4~2013.9.3)

(2011.6.1 현재)

구 분	성 명	소 속 및 직 위
		E-mail
공익위원	박 종 길	근로개선정책관
	하 형 소	근로개선정책관 근로복지과장
	김 동 원 (金 東 元)	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수 dokim@korea.ac.kr
	신 은 종 (申 殷 宗)	단국대학교(죽전) 상경대 교수 eshin@dankook.ac.kr
	전 선 애 (田 善 愛)	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echun@cau.ac.kr
근로자위원	백 영 길 (白 英 吉)	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kfiu100@hanmail.net
	유 영 철 (劉 永 徹)	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chul7295@hanmail.net
	이 정 식 (李 正 植)	한국노총 사무처장 winwinmaker@empal.com
	강 규 혁 (康 圭 赫)	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kkh0010@lycos.co.kr
	정 희 성 (鄭 僖 成)	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0116262693@naver.com
사용자위원	김 동 욱 (金 東 昱)	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dream21@kef.or.kr
	백 양 현 (白 陽 鉉)	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byh@kbiz.or.kr
	박 종 남 (朴 宗 男)	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(상무이사) jnpark@korcham.net
	조 순 조 (趙 順 祚)	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회장 ironcho52@hanmail.net
	안 종 현 (安 鍾 賢)	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 ajh@fki.or.kr

< 별지 2 >

자산운용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

□ 설치목적

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금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

□ 위원회 구성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 : 임금복지과장
- 위 원
 - 당연직위원 : 임금채권보장기금 담당사무관
 - 위촉직위원(3명) :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
- 위원의 임기
 - 당연직 위원 :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
 - 위촉직 위원 : 2년,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

성 명	소속 및 직위	위촉기간
위 경우	숙명여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	2010.5.4 ~ 2012.5.3
이 태호	한국채권연구원 이사	"
김 주훈	(주)KIS채권평가 펀드평가팀 팀장	"

□ 주요자문사항

- 자산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
-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□ 기타사항

-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지급